

## I. 첫머리에

영국에서는 1976년 성범죄 법(Sexual Offences Act 1976)에 성범죄 피해자의 익명성 보호가 명시되면서 성범죄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성범죄 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 범위가 확대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IPSO(Independent Press Standards Organisation)를 중심으로 한 자율적 규제도 이루어지고 있다. <BBC> 등 영국 언론사들은 성범죄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인 규율을 만들어 성범죄 보도를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원고에서는 일반적인 범죄 피해자의 신원 보도가 가능한 영국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인격권은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그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언론 자율규제기관인 IPSO가 수립한 ‘언론인 실천 강령(The Editors’ Code of Practice)’의 성범죄 보도 관련 조항들을 사례와 함께 살펴본다. IPSO는 성범죄 보도에 있어 언론사들이 IPSO의 ‘언론인 실천 강령’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범죄 보도 가이드선스(Guidance on reporting sexual Offences)’ 또한 최근 발간한 바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IPSO가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발간한 ‘대언론 가이드라인(Contact with media)’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영국을 대표하는 언론사인 <BBC>의 경우, 어떤 자체적인 규정 도입을 통해 성범죄 보도를 규제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 II. 일반 사건에서의 피해자 신원 공개

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자 및 피의자 보도는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영국은 데이터

\* 런던대학교 골드스미스 칼리지 미디어 석사, judaewu@hanmail.net

보호법(Data Protection Act)과 인권법(Human Right Act) 등을 통해 개인의 신상이 본인의 동의 없이 타자에 의해 이용되거나 공개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신원 공개가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한 목적인 경우 예외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신원 공개가 수사에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한다면 신원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언론보도도 마찬가지로, 범죄 피의자의 신원을 대중에게 알림으로써 추가적인 범죄를 막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경우, 데이터 보호법과 인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영국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2009년 가이드라인<sup>1)</sup> 배포를 통해 수사에 도움이 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경우,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의자의 사진 등을 언론에 제공하여 수사를 용이하게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는 ‘공익’은 범죄 예방, 범죄자 체포, 목격자 및 추가 피해자 제보, 일반 대중에 대한 정보 제공, 형사 사법제도 강화 등을 널리 포함한다. <BBC> 등 언론사도 이런 법리 해석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할 때에 피의자 신원을 보도하고 있다. 단, 피의자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을 때는 보도가 제한된다. 이에 비해 범죄 피해자 신원 공개는 공공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 경우가 있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수사단계에서 이들의 신원이 보도되는 경우는 드물다.

한편, 재판단계에서는 사정이 달라진다. 영국 사법제도에서 공개재판(open justice)의 원칙은 매우 핵심적인 원칙 중 하나다. 공개재판의 원칙은 재판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재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법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사법 중립성 수호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가 재판을 방청하고, 이 내용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 또한 영국에서는 언론의 매우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언론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판을 방청할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상세히 보도할 수 있다. 특히, 사건의 피고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정보 또한 일반적으로 보도가 가능하다.

---

1)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 of England, Wales & Northern Ireland (2009). GUIDANCE ON THE RELEASE OF IMAGES OF SUSPECTS AND DEFENDANTS. <http://library.college.police.uk/docs/acpo/ACPO-Guidance-Release-Images-Suspects-Media.pdf>

### III. 성범죄 사건에서의 피해자 신원 공개

공개재판 원칙으로 인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한 신원공개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로 성범죄 사건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성범죄 사건 피해자는 본인이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신고를 한 순간부터 평생 동안 자동적인 익명성을 보장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이전 수사단계에서도 성범죄 피해자의 익명성은 보장된다.

성범죄 범주에는 다양한 행위가 포함되는데, 강간, 성폭행, 노출, 어린이의 외설적인 사진 촬영 등이 대표적이다. 성범죄 피해자의 익명성은 성범죄 사건이 무죄로 종결되거나 고소 취하 등과 관계없이 평생 보장된다.

이런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격권 보호는 1976년에 개정된 성범죄 법(The Sexual Offences Act 1976)<sup>2)</sup> 제4조 ‘강간 등 사건에서 원고의 익명성(Anonymity of complainants in rape etc cases)’이 도입되면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이 규정은 1975년에 강간 관련 법에 대한 리뷰가 이루어지는 동안 도입이 결정되었는데, 성범죄 피해자들이 본인의 성범죄 연루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짐으로써 입게 될 피해를 우려하여 성범죄 소송과 신고를 꺼린다는 판단 하에 도입되었다. 다만, 성범죄 법 1976의 경우, 원고와 피고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성범죄 가해자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해서도 익명성을 보장토록 했다. 이후 1988년에 피고에 대한 익명성은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2010년에 신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를 다시 보장하도록 법 개정을 시도하는 등 아직까지도 성범죄 피고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익명성 보장 관련 법규는 1992년 성범죄 법(The Sexual Offences Act 1992)<sup>3)</sup> 제1조 ‘특정 범죄 피해자의 익명성(Anonymity of victims of certain offences)’에서 그 내용이 확대되었다. 해당 규정은 성범죄 피해자나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익명성을 평생 보장하도록 하여 익명성 보장의 시간적 범위를 확대하였고, 피해자의 신분이 보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언론의 보도를 지목, 특정하고 있다. 물론, 일부

---

2) UK Parliament (1976). Sexual Offences (Amendment) Act 1976.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76/82/contents>

3) UK Parliament (1992). Sexual Offences (Amendment) Act 1992.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2/34/section/1>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는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이 공개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범죄 피해자의 익명성은 성범죄 관련 재판에서만 보호되므로, 이와 관련 없는 다른 사건 재판에 성범죄 피해자가 연루되어 있다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이후에 논의될 <더 아거스(The Argus)> 사례를 들 수 있다. 둘째, 특수한 경우에 판사가 자동적인 익명성 부여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셋째, 피해자가 16세 이상인 경우, 법원의 동의 없이도 피해자가 본인의 익명성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16세 이하 피해자는 익명성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sup>4)</sup>.

#### IV. 성범죄 보도와 자율규제

영국 언론사들은 성범죄 법에 근거하여 성범죄 보도로 인해 성범죄 피해자의 정보가 알려지거나 2차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율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 언론사들은 IPSO(Independent Press Standard Organisation)라는 독립적인 언론 규제기관을 설립하여 영국 언론사들이 지켜야 할 자율 규정인 ‘언론인 실천 강령(The Editors’ Code of Practice)’<sup>5)</sup>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실천 강령 제11조와 제7조에서 성범죄 관련 보도에 대해 다루고 있다.

##### 1. 제11조 성폭행 피해자(Victims of sexual assault)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언론인 실천 강령 제11조에 따르면, 언론은 성폭행 피해자의 신분을 보도해서는 안 되며(must not identify victims of sexual assault), 성폭행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떤 내용도 보도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은 2019년 개정된 바 있는데, 기존에는 성폭행 피해자의 신분이 언론보도를 통해 노출되

---

4) The anonymity only relates to the relevant proceedings. A victim may be identifiable in the context of unrelated proceedings. In certain circumstances, magistrates or the trial judge may lift the automatic rule of anonymity. Victims can choose to waive their right to anonymity,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urt, so long as they are over 16. Victims under 16 cannot waive their right to anonymity.

5) IPSO (2019). The Editors’ Code of Practice.  
<https://www.ipso.co.uk/media/1818/69196-ipso-editors-code-2019.pdf>

는 경우만 규제했다면, 개정된 규정에서는 성폭행 피해자의 신분이 언론 보도 전 취재 과정에서도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추가적인 제약을 두고 있다. 해당 규정 개정의 배경은 일부 언론사들이 성범죄 사건 보도 전,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한 성범죄 사건 취재 과정에서 언론사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성범죄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하는 경우가 보고 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규정이 도입되게 된 데에는 2016년 <데일리 메일(Daily Mail)>의 성범죄 사건 취재 과정이 언론인 실천 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룬 IPSO 결정례가 크게 작용했다.

당시 IPSO 불만처리위원회(IPSO complaint committee)는 결정례에서 언론인 실천 강령 제11조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제11조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명시한 바 있다. IPSO는 이를 받아들여 2019년 제11조 내용을 <표 1>과 같이 개정했다.

**<표 1> 언론인 실천 강령 제11조 개정 내역**

조항	제11조 성폭행 피해자(Victims of sexual assault)
기존	언론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고 법적으로 그리할 수 있지 않는 한, 성폭행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해서는 안 되며,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내용도 게재해서도 안 된다 <sup>6)</sup> .
개정	언론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고 법적으로 그리할 수 있지 않는 한, 성폭행 피해자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을 노출하거나 게재해서는 안 된다. 언론인은 취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성폭행 피해자의 신분에 대한 비정당한 폭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와 신중을 기해야한다. <sup>7)</sup>

출처: The Editors' Code of Practice, IPSO

### 사례 1. <데일리 메일(Daily Mail)>의 성범죄 사건 취재<sup>8)</sup>

제11조 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데일리 메일>의 성범죄 보도에 대한 IPSO의 결정례에 따르면, <데일리 메일>의 기자들은 영국 워릭셔(Warwickshire) 지역에서 일어난 한 성범죄 사건을 취재하고 있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3명이었으며, 가해자는 유

6) The press must not identify victims of sexual assault or publish material likely to contribute to such identification unless there is adequate justification and they are legally free to do so.  
 7) The press must not identify or publish material likely to lead to the identification of a victim of sexual assault unless there is adequate justification and they are legally free to do so. Journalists are entitled to make enquiries but must take care and exercise discretion to avoid the unjustified disclosure of the identity of a victim of sexual assault.  
 8) IPSO (2016). 16830-17 Warwickshire Police v Daily Mail.  
<https://www.ipso.co.uk/rulings-and-resolution-statements/ruling/?id=16830-17>

죄로 판명되었다.

사건 피해자들은 <데일리 메일> 기자들의 언론보도를 위한 취재 행위로 인해 본인들의 신원이 노출되어 큰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3명의 피해자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피해자는 <데일리 메일> 소속의 한 프리랜서 기자가 그들 친구의 집을 방문하여, 해당 성범죄 사건에 대해 묻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신원이 밝혀졌다고 보았다. 당시 기자는 전자기기를 통해 피해자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보여주며, 이들의 연락처나 이들 부모님의 연락처를 아느냐고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피해자의 친구는 이 명단에서 피해자들의 이름을 알아보았다. 물론, 기자가 제시한 명단에 성범죄 피해자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다. 두 피해자의 친구는 당시 일어난 사실을 두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알렸다. 부모님은 자신의 자식들이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충격을 받았다. 또한, 친구는 본인이 이 사실을 지역사회에 더 널리 알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해당 기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이런 정보를 자신에게 노출했다는 것에 대해 큰 유감을 나타냈다.

두 피해자는 부모님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 성범죄 피해 사실을 숨겼으며, 그들의 친구 또한 성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고 밝혔다. 두 피해자는 워릭셔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받았으나, <데일리 메일> 기자로 인해 자신들의 성범죄 피해 사실이 제3자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두 피해자는 물론 그들의 부모에게도 상당한 고통과 불안을 야기했다고 주장하였다. 기자는 그날 저녁 두 피해자의 부모님 집에 찾아갔으며, 두 번째 피해자의 집에도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피해자 또한 <데일리 메일>의 한 기자가 자신의 부모님에게 찾아왔다고 밝혔다. 해당 기자는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기사’를 쓰고자 했으며, 부모님에게 자녀를 만날 수 있는지 물었다고 밝혔다. 세 번째 피해자는 이 기자의 행동으로 인해 본인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음을 부모님이 인지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 메일>은 소속 기자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유발한 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이 사건이 IPSO의 ‘언론이 실천 강령’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데일리 메일>은 소속 기자가 한 프리랜서 기자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접촉을 시도해보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해당 프리랜서 기자는 두 피해자의 친구를 접촉하면서, 해당 친구가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접촉했

다고 주장하였다. 두 피해자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보여주었다는 피해자 측 주장에 대해서도 대화 과정에서 기자의 핸드폰이 노출되었을 수는 있으나, 의도성을 가지고 보여준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즉, 어떤 정보 노출도 ‘의도성’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두 피해자의 부모 집을 두 번 방문했으나 아무도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 번째 피해자 부모와의 만남에 대해 ‘피해자 기사’를 쓰고자 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모의 자녀가 성폭행의 피해자로 추정된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자는 이들의 자녀가 이번 사건에 연관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녀를 만나고 싶다고 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런 점에서 <데일리 메일>은 이번 사건이 IPSO의 언론인 실천 강령 제11조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당시 언론인 실천 강령 제11조는 성범죄 피해자의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기사에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데일리 메일>은 그런 정보를 기사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사 기자가 언론인 실천 강령 제11조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언론보도를 위한 기자의 사건 취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행방과 연락처를 알기 위해 그들의 친척이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은 피해자의 신원 노출을 필연적으로 유발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프리랜서 기자는 성범죄 사건과 명단 간의 관계를 설명한 바도 없다고 피력했다.

한편, <데일리 메일> 기자의 취재 행위가 언론인 실천 강령 제1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향후 법원의 발표자료 이상의 수준으로 범죄 사건을 심도있게 보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우려하였다. 예를 들어, 경찰 언론 담당관에게 특정 사건의 자세한 사항을 물어볼 때, 해당 담당관이 해당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모르고 있었다면, 기자가 해당 담당관에게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한 것이 되므로, 이 또한 언론인 실천 강령 제11조를 어긴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언론인의 악성 범죄사건 취재 및 보도에 있어 심각한 어려움을 유발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데일리 메일>은 언론인의 취재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 등에게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게 되는 것은 중요 범죄 사건의 보도라는 ‘공익’ 차원에서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폭행 피해자들이 인터뷰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언론의 이런 접근 활동이 없다면 성폭행 피해자들이 인터뷰하고 싶어 하는지 알 방법조차 없다고 밝혔다.

〈데일리 메일〉은 이번 사건이 언론인 실천 강령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지만, 이를 관계자 및 임원에게 보고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편지는 물론, 도의적 차원의 보상 제공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고소인들은 〈데일리 메일〉의 합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공식적인 판결만이 향후 성범죄 피해자가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았다.

이번 사건에 대해 IPSO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성범죄 관련 보도에 있어, 성폭행 피해자의 익명성은 법률과 언론인 실천 강령에 의해 보장된다. 하지만, 법정에서 공판 중에는 피해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출입기자들은 피해자의 신원과 같은 일반 대중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언론이 법원을 감시하고 법원이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언론은 이런 민감한 정보를 보도에 이용하는 데 있어 주의를 기울일 의무 또한 있다고 하겠다. 성범죄 관련 사건을 보도하면서 언론이 피해자 인터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행위이며 정당화될 수 있다. 성범죄 피해자가 그들의 경험이나 해당 범죄의 영향에 대해 인터뷰하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피해자 접촉은 피해자의 익명성 보장의 권리와 사안의 민감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IPSO 위원회는 기자가 고소인과 관련된 제3자를 만남에 있어, 제3자가 고소인을 피해자로 알아차릴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어야 했다고 보았다. 이번 사건에서 기자는 성폭행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지역 사회에서 잘 알려진 범죄 사건을 언급하면서 기자가 소유한 명단의 인물을 찾고 있다고 했으며, 이들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미 해당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피해자의 성별과 대략적인 연령 정보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기자가 제3자에게 고소인들의 이름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고소인들이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런 과정의 결과로 고소인들이 해당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임이 고소인들의 부모에게 알려졌다고 위원회는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IPSO 위원회는 〈데일리 메일〉이 언론인 실천 강령 제11조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제2조 ‘프라이버시’를 위반한 것으로 판결했다. 성범죄 피해

자로서 특정 사건에 연관된 것은 매우 민감하고 개인적인 정보이며, 3명의 고소인은 이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데일리 메일>의 보도가 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물론, 범죄 사건을 보도하기 위한 언론의 취재에는 공익적인 면이 있지만, 고소인들이 법률과 언론인 실천 강령에 의해 익명성의 권리를 보장 받는 상황에서 공익적 목적이 고소인들의 민감한 사적인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노출하는 것까지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IPSO 위원회는 <데일리 메일>이 성범죄 사건 보도를 위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익명성 권리를 침해한 부분에 대해, 성범죄 피해자 익명성에 대한 조항인 제11조를 적용하지 못하고 제2조 프라이버시를 적용했다. 그 사유에 대해 제11조의 ‘모호성’을 지적하였다. <데일리 메일>의 행위가 분명히 성범죄 피해자의 익명성 권리를 침해한 것이 사실이나, 제11조 조항의 모호성 때문에 정작 성범죄 피해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한 조항인 제11조는 적용하지 못하였고, 차선책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2조 프라이버시 조항을 활용하여 <데일리 메일>의 행위를 규제했다.

실제로 당시 언론인 실천 강령 제11조는 “언론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고 법적으로 그리할 수 있지 않는 한, 성폭행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해서는 안 되며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내용도 게재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었다. IPSO 위원회가 제11조를 <데일리 메일>의 행위에 적용하지 못한 이유는 해당 조항이 언론보도가 아닌, 취재 과정에서의 성폭행 피해자 신분 노출까지 포함하고 있는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IPSO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이 향후 리뷰 과정에서 더 명확한 내용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위원회 권고에 따라, IPSO는 지난 2019년 언론인 실천 강령 제11조를 수정하였다. 수정 사항은 제11조에 “언론인은 조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성폭행 피해자의 신분에 대한 비정당한 폭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와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제11조는 언론 보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피해자의 신분 노출에 대한 부분은 물론, 언론의 사건 취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피해자의 신분 노출 문제까지 언론의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 2. 제11조 예외 조건 중 ‘충분한 정당성’ 이슈

언론인 실천 강령 제11조는 성폭행 피해자의 익명성 보호를 언론사들에 강제하면서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11조가 적용될 수 없는 예외적인 조건으로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첫째는 법적으로 그리할 수 있어야 하고(legally free to do so), 둘째는 충분한 정당성(adequate justification)이 있어야 한다. 두 가지 조건 모두가 충족될 때에만 제11조가 규정한 성범죄 피해자 익명성 보장의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IPSO의 그간 중재 사건의 결정례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조건 적용에 대한 논란은 그간 없었으며, 항상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슈가 되고 있다. 첫 번째 조건인 “법적으로 그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은 영국 대부분의 지방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지방에서만 예외가 적용된다.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법의 경우, 성범죄 피해자의 익명성 보장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법적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인 실천 강령 제11조는 법적으로 그리할 수 있을지라도, 충분한 정당성까지 갖췄을 때만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보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분한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언론중재사건에 있어 첨예한 대립점이 되고 있다.

### 사례 2. <데일리 레코드(Daily Record)>의 성범죄 피해자 실명 보도<sup>9)</sup>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데일리 레코드(Daily Record)>의 성범죄 사건 보도를 꼽을 수 있다. 해당 보도는 한 파티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자신의 가슴을 접촉한 혐의를 다루고 있다. 이 사건은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일어나, 스코틀랜드 지방법원으로 귀속되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데일리 레코드>는 이 사건 관련 보도를 하면서 원고, 즉 추정 피해자의 이름을 공개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데일리 레코드>가 언론인 실천 강령 제11조를 위반했다고 IPSO에 제소했다. 또한, <데일리 레코드>가 본인의 실명을 보도한 것뿐만이 아니라 기사에서 “본인이 본인을 성폭행 피해

9) IPSO (2015). 05764-15 A man v Daily Record.

<https://www.ipso.co.uk/rulings-and-resolution-statements/ruling/?id=05764-15>

자로 여긴다”라고 보도한 점도 문제삼았다. 보도 내용은 사실이나, 이를 대중에게 널리 보도함으로써 피해자 본인에게 모욕감을 주었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이 다른 성범죄 보도 사건과 다른 점은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의 경우, 모든 성범죄 피해자에게 자동적인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사가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보도하는 것은 스코틀랜드 법률에 따르면 가능하다. 해당 보도가 나간 2015년 당시 언론인 실천 강령 제11조는 “법적으로 그리할 수 있지 않는 한, 성폭행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법적으로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쟁점은 성폭행 피해자 신분 노출에 있어 ‘충분한 정당성(Adequate justification)’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었다.

〈데일리 레코드〉는 성폭행 피해자 신분 노출에 있어 2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스코틀랜드 법에 성폭행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판사가 판단하여 필요 시 이를 보장하도록 명령하게 되어 있는데 판사가 어떤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의 익명성 보호의 필요성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해당 사건이 법원에서 성폭행으로 분류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해당 사건 담당 판사는 이 사건을 성폭행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피고는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데일리 레코드〉가 보도한 바와 같이 원고 본인이 본인을 성폭행 피해자로 여겼을 뿐, 법원에서는 이를 성폭행 사건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번 사건이 성폭행 관련 범죄가 아니라면, 제11조의 “성폭행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은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데일리 레코드〉는 주장했다.

하지만, IPSO 위원회는 이 사건을 언론 실천 강령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IPSO 위원회는 ‘성폭행 피해자’를 정의함에 있어 법률이 아닌, 피해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성폭행 피해자 익명성 보장의 목적이 성폭행 피해를 신고할 때,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게 함이기 때문이다. 성폭행 피해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신고 후에 법원이나 제 3자에 의해 판단받아야 한다면, 성폭행 피해 신고를 망설이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11조에 명시된 성폭행 피해자의 익명성 보장에 있어 ‘성폭행 피해자’라 함은 피해 당사자의 판단에 따라 정의되며, 이 조항은 이 피해자가 피

해 사실을 신고하는 순간부터 적용<sup>10)</sup>된다고 보았다. 또한, 제11조에 따른 성폭행 피해자의 익명성 보장은 해당 사건이 무죄로 판결되거나 고소가 취하되더라도<sup>11)</sup>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이 법원에서 성폭행 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한 것은 아니라는 <데일리 레코드>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IPSO 위원회는 법원의 무죄선고나 판사의 의견도 “원고가 스스로 규정한 본인의 성폭행 피해자 지위(Self-identified victim of sexual assault)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위원회는 또한 스코틀랜드 법에 따라 언론사가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을 보도하는 것이 위법이 아닐지라도, IPSO 소속 언론사는 언론인 실천 강령을 따를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성폭행 피해자의 익명성에 관한 스코틀랜드 법의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영국 언론의 성폭행 피해자 익명성 보호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IPSO의 강령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 사례 3. <더 아거스 (The Argus)>의 성범죄 피해자 실명 보도<sup>12)</sup>

<데일리 레코드>의 사례가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 보도에 있어 언론의 ‘충분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라면 <더 아거스(The Argus)> 신문사의 경우는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보도했지만 ‘충분한 정당성’을 인정받은 경우다.

2017년 10월 13일에 영국 브라이튼 지역의 신문사 <더 아거스>는 기사에서 특정 여성의 실명을 거론하며, 해당 여성이 폭행과 경찰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기사는 해당 여성이 과거 TV의 재능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으며, 한 남성에게 스트립 댄스를 춘 후 그 남성을 폭행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해당 여성은 오히려 본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여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해당 여성이 TV 재능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진과 법원 밖에서 촬영된 사진을 게재하였다.

---

10) The Code apply as soon as a person complains that they are a victim of a sexual assault.

11) Regardless of whether the defendant is acquitted or the allegation is later withdrawn

12) IPSO (2016). 20796-17 A woman v The Argus (Brighton).

<https://www.ipso.co.uk/rulings-and-resolution-statements/ruling/?id=20796-17>

해당 여성은 IPSO에 <더 아거스> 신문사의 보도를 제소하며, 본인이 성폭행 피해자였기 때문에 <더 아거스> 신문사가 본인의 실명을 밝혀서는 안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인은 이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본인의 사진을 게재한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 아거스> 신문사 측은 관련 기사가 해당 여성이 주장하는 성폭행 피해에 대한 보도가 아니라, 해당 여성이 남성에게 가한 폭행과 경찰 업무 방해에 대한 보도였기 때문에 제11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더 아거스> 신문사는 성 범죄법(Sexual Offences Act)이 성폭행 피해자에 대해 자동적인 익명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성폭행 사건과 별개의 범죄 사건을 보도하는 것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아거스> 신문의 기사가 해당 여성이 성폭행 피해자 행세로 사법 절차를 남용하려 했다는 혐의를 보도했다는 점에서 해당 여성의 실명 공개는 법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IPSO는 <데일리 레코드> 신문사의 보도 사건과 마찬가지로 해당 여성이 스스로 규정한 성폭행 피해자의 지위를 인정했지만, <더 아거스> 신문이 제1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데일리 레코드> 신문사 보도 사건에서 IPSO는 법원의 판단과는 무관하게, 성폭행 피해자가 본인을 성폭행 피해자라고 신고하는 순간부터 성폭행 피해자의 지위가 부여되고, 이들은 익명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와 동일하게, IPSO는 <더 아거스> 신문의 보도에서도 해당 여성이 성폭행 피해자라고 거짓 신고를 했다 할지라도, 성폭행 피해자로서 익명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여성의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은 <더 아거스> 신문사의 행위가 제11조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는데, 이는 더 아거스 신문사의 성범죄 피해자 실명 공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음은 물론, '충분한 정당성(Adequate Justification)'을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IPSO는 영국 법률에 따라, 피해자와 연관된 다른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는 성폭행 피해자의 법적 익명성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IPSO는 재판의 투명성 원칙의 중요성과 사건 보도를 통한 공익(Public interest)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더 아거스> 신문사의 보도가 이 두 가지 점에서 충분한 정당성을 확보한 보도였다고 판단했다. IPSO는 <더 아거스>의 보도가 해당 여성의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다루고 있었고, 이 재판에서 해당 여성이 주장한 성폭행 피해에 대한 사실 여부가 핵심적인 부분이었다는 점에서 해당 여성의 실명보도는 정당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IPSO는 <데일리 레코드>와 <더 아거스> 신문이 동일하게 성범죄 피해자의 실명을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일리 레코드>의 기사는 보도의 ‘충분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더 아거스> 신문의 보도는 ‘충분한 정당성’을 가지는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보도의 정당성이 ‘충분’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여전히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향후에도 여러 언론사의 성범죄 보도가 ‘충분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는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IPSO의 <더 아거스> 신문 보도에 대한 결정례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해당 결정례에서 IPSO는 <더 아거스> 신문의 성범죄 피해자 신원 노출이 충분한 정당성을 가지는 사유로 두 가지를 들었는데, 첫째, 법적으로 성범죄 이외의 범죄를 보도할 때 이와 관련된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측면과 둘째, 공익적 측면을 들었다. 하지만, IPSO의 언론인 실천 강령 제11조 자체가 ‘법적으로 그리할 수 있을지’ 라도, 그 보도가 ‘충분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별개의 사안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아거스> 신문의 피해자 보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이 성범죄 피해자의 실명 공개에 ‘충분한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또한, 공익적 측면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실명 거론이 충분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석한 부분도 그간 IPSO가 공익이 성범죄 피해자의 인격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판단해왔던 것과 반하는 부분이다.

IPSO가 <더 아거스> 신문의 성범죄 피해자 실명 보도가 공익적 측면에서 ‘충분한 타당성’을 가진다고 판단한 이유에 성범죄 피해자로 주장되는 여성이 가짜 신고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이 작용했을 수 있다. 실제로 성범죄 관련법에서도 가짜 성범죄 신고자들의 익명성까지 보장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가 아직까지 논란으로 남아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가짜 신고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은 정황상 주장일 뿐이며,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IPSO가 이를 먼저 판단할 수 없다. 또한, 법원이 이를 가짜 성범죄 피해 신고로 판단하더라도 현행법상 성범죄 사건은 유무죄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자, 즉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신원은 평생 동안 익명성을 보장 받아야 하므로 IPSO의 <더 아거스> 신문 보도에 대한 판단은 충분한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향후에도 언론사들의 성범죄 보도가 ‘충분한 정당성’을 가졌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 아거스> 신문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지만,

다른 유사한 경우에도 IPSO가 같은 판단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를 들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이를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해당 명예훼손과 무고 사건을 보도하면서 명예훼손이 발생한 사유이자 무고죄 고소의 원인이 성범죄 사건 내용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경우, <더 아거스> 신문의 사례와 같이 성범죄 피해자가 가짜 피해자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실제 성범죄 피해자가 신원 노출의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 3. 제7조 ‘성 관련 사건의 어린이 (Children in sex cases)’

IPSO의 언론인 실천 강령 중 성범죄 보도에 적용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조항은 제7조 ‘성 관련 사건의 어린이(Children in sex cases)’다. 이 조항은 제11조 ‘성폭행 피해자’ 규정에 더하여, 어린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11조에서는 법적으로 그리할 수 있지 않은 한, 성폭행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7조는 제11조와 달리, 법률 이상의 수준으로 어린이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그리할 수 있을지라도(even if legally free to do so), 16세 이하 성범죄 피해자의 신분은 노출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1조 대비 제7조가 추가적으로 담고 있는 부분은 어린이 성범죄의 경우,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혹은 피고와 원고 사이의 관계가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7조는 어린이 성범죄의 경우, ‘근친상간’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기사에 어떤 것이라도 피고와 어린이 사이의 관계를 암시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표 2〉 언론인 실천 강령 제7조

조항	내용
제 7조	<p>성 관련 사건의 어린이(Children in sex case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언론은 법적으로 그리할 수 있을지라도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의 16세 이하 피해자나 목격자 신분은 노출해서는 안 된다.</li> <li>2. 어린이 성범죄와 연관된 사건의 언론 보도에 있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어린이의 신분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li> <li>ii) 어른의 신분은 노출 될 수 있다.</li> <li>iii) 어린이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근친상간이라는 단어는 사용될 수 없다.</li> <li>iv) 피의자와 어린이 사이의 관계를 암시할 수 있는 어떤 내용도 보도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 동반되어야 한다.<sup>13)</sup></li> </ol> </li> </ol>

출처: The Editors' Code of Practice, IPSO

#### 사례 4. <윌츠 & 글로스터셔 스탠다드(Wilts & Gloucestershire Standard)> 어린이 성범죄 사건 보도<sup>14)</sup>

언론인 실천 강령 제7조가 적용된 대표적인 예는 2015년 <윌츠 & 글로스터셔 스탠다드(Wilts & Gloucestershire Standard)> 신문의 어린이 성범죄 사건 보도를 들 수 있다.

당시 <윌츠 & 글로스터셔 스탠다드>는 공판에 참석하여 들은 내용을 인용하여 기사화했는데, 추후 무죄로 판결 받은 당시 피고가 해당 기사 내용이 너무 상세했으며 성폭행 가해자와 어린이 피해자 간에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였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해당 기사가 당시 피고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었으므로 신문 구독자들이 피해 어린이를 추측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인 실천 강령 제7조 ‘성 관련 사건의 어린이’와 제11조 ‘성범죄 피해자’를 모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윌츠 & 글로스터셔 스탠다드>는 해당 사건 보도에 있어 어린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재판 내용을 인용한 부분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암시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IPSO 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윌츠 & 글로스터셔 스탠다드>가 제7조와 제11조 모두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무엇보다 재판 내용을 인용한 부분이 해당 사건 원고와 피고 간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sup>15)</sup> 언론이 재판 내용을 인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이지만 법적으로 그리할 수 있을지라도, 언론인 실천 강령 제7조에 따르면 어린이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노출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IPSO는 <윌츠 & 글로스터셔 스탠다드>가 제7조를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기사가 어린이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제11조 또한 위반한 것으로 판결했다.

---

13) 1. The press must not, even if legally free to do so, identify children under 16 who are victims or witnesses in cases involving sex offences. 2. In any press report of a case involving a sexual offence against a child, i) the child must not be identified ii) the adult may be identified. iii) The word “incest” must not be used where a child victim might be identified. iv) Care must be taken that nothing in the report impl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cused and the child.

14) IPSO (2015). 05764-15 00768-15 A man v Wilts & Gloucestershire Standard. <https://www.ipso.co.uk/rulings-and-resolution-statements/ruling/?id=00768-15>

15) 해당 인용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IPSO 결정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결정례에 해당 인용문을 담은 것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을 암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IPSO는 밝히고 있다.

## 사례 5. <더 가제트(The Gazette)> 어린이 성범죄 사건 보도<sup>16)</sup>

모든 어린이 성범죄 사건에 제7조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더 가제트(The Gazette)> 신문의 어린이 성범죄 보도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더 가제트> 신문사가 지나치게 상세한 보도로 어린이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는 물론 어린이 피해자의 신원 또한 노출되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더 가제트>의 첫 번째 신문 기사는 성폭행이 시작되었을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물론, 성폭행의 지속 기간을 연월 단위로 보도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된 상황과 요일을 명시했다. 두 번째 기사에서는 유죄판결을 전하며 다시 성폭행의 지속 기간을 연월 단위로 보도했고, 성폭행이 일어난 상황을 그래픽으로 묘사함은 물론, 법원 밖에서 촬영한 피의자 및 피의자 부인 사진을 게재했다.

이 보도에 대해 피해자는 <더 가제트> 신문사가 법원에서 들은 내용을 너무 자세히 보도하여 자신의 신원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 가제트> 신문사의 피의자 사진 공개가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피해자는 <더 가제트> 신문사가 성폭행 당시의 상황을 그래픽으로 자세하게 보도한 데 대해서 법원 밖에서 그 내용이 다시 이야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사실이 아닌 피의자의 진술을 보도하여 본인에게 상당한 고통을 야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더 가제트> 신문사는 해당 기사의 상세한 내용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기사가 재판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 전달은 대중이 해당 사건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며 긍정적 부분을 강조했다. 또한,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더 가제트 신문사의 보도내용 중 자신의 신분노출에 영향을 주었다고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 반박의견을 위원회에 전달했다.

위 사건에 대해 IPSO 위원회는 제11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IPSO 위원회는 판결문에서 신문사는 성범죄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피고의 사진을 포함해 피고의 신원을 밝힐 권리가 있지만, 이 보도가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데 기여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다. 즉, 피해자의 신원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피의자의 신원 또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상세히 노출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이다. 또한, IPSO 위원회는 신문사가

---

16) IPSO (2016). 12775-17 A Man v The Gazette (Paisley).  
<https://www.ipso.co.uk/rulings-and-resolution-statements/ruling/?id=12775-17>

상세히 보도한 성폭행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나이, 성폭행 피해 기간 등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피해자의 신분을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더 가제트> 신문사의 보도가 제7조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성폭행 사건 당시 이 사건의 피해자는 16세 이하 어린이였으나, <더 가제트>의 보도 당시 사건의 피해자는 이미 16세가 넘어 어린이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IPSO 위원회는 어린이 성범죄 사건에서 어린이 피해자의 익명성 보장을 다른 제7조를 적용하지 않고,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다른 제11조를 적용했다.

#### 4. 언론인 실천 강령 제 1, 2, 3조도 성범죄 피해자 보도에 적용

IPSO의 언론인 실천 강령 중 제7조와 제11조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다루고 있지만, 제1조 정확성(Accuracy), 제2조 프라이버시(Privacy), 제3조 괴롭힘(Harassment) 또한 성범죄 사건 보도에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더 아거스>와 <테일리 레코드>의 성범죄 보도는 제11조뿐만 아니라, 제1조, 제2조, 제3조에 걸쳐 위반이 있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있었으며, <더 가제트> 신문사 및 <더 월츠 앤 글로스터셔 스탠다드>의 경우에도 제1조와 제2조에 걸쳐 위반 혐의가 제기되었다.

우선, 제1조 정확성은 언론의 보도가 틀린 부분 없이 정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제1조 제1항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제1조 제1항은 “언론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헤드라인 등을 포함하여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왜곡된 정보나 이미지를 발간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sup>17)</sup>”고 규정하고 있다. <더 아거스>의 보도에서는 기사가 검찰 측의 증거만을 보도하여, 결과적으로 부정확한 내용을 전달했다는 점이 제1조 위반의 증거로 주장되었다. <테일리 레코드> 사건에서는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의 반응에 대해 부정확하게 기사화되었다는 점이 주장되었다. <더 가제트> 신문사의 경우, 피해자의 특정 행위에 대한 피고의 설명을 다루고 있으나,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 측의 설명이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가제트> 신문사의 기

---

17) The press must take care not to publish inaccurate, misleading or distorted information or images, including headlines not supported by the text.

사가 부정확하다고 지적되었다.

제1조는 성범죄 사건 보도에 있어 가해자나 피해자 한쪽의 의견만을 전달하거나 사실이 아닌 '주장'을 기사화하거나 성범죄 상황을 묘사함에 있어 부정확할 경우, 그 위반 혐의가 제기되는 것으로 과거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재판 중인 사건의 특성상 피고와 원고 양측에서 제기된 주장 사실은 확인할 수 없으며, 재판 과정에서 취득된 정보를 그대로 기사화하는 한 제1조에 대한 위반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제2조 '프라이버시' 제1항은 "모든 사람이 그들과 그들 가족의 삶, 집, 건강,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통신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sup>18)</sup>"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 서두에서 "언론인은 개인의 사적인 삶을 동의 없이 침해하는 데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sup>19)</sup>"고 명시했으며, 제3항 서두에서는 "합당한 프라이버시가 기대되는 공적, 사적 공간에서는 동의 없이 개인의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된다<sup>20)</sup>"고 구체적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유형을 명시하고 있다.

성범죄 보도에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부분이 자주 문제시되는 이유는 성범죄 사건이 개인의 민감한 경험을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도가 개인의 삶과 건강은 물론 가족의 삶과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아거스>의 보도와 관련하여 사진을 찍었다는 부분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혐의가 제기되었으며, <더 가제트> 신문사 보도의 경우 성폭행 과정을 묘사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 아거스>의 보도는 성폭행 피해자가 아닌 폭행 및 업무방해 가해자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해석되어 제2조 프라이버시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더 가제트> 신문사의 경우 재판 내용을 상세히 보도한 것으로 해석되어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데일리 메일>의 경우, 언론보도를 위한 조사 과정에서 부주의로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 개인의 사적인 삶에 큰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되어 제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결되었다.

---

18) Everyone is entitled to respect for his or her private and family life, home, health and correspondence, including digital communications.

19) Editors will be expected to justify intrusions into any individual's private life without consent.

20) It is unacceptable to photograph individuals, without their consent, in public or private places where there is a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제3조 ‘괴롭힘’ 제1항은 “기자가 협박이나 괴롭힘, 지속적인 추적에 관여되어서는 안 된다<sup>21)</sup>”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 서두에서 “기자들에게 그만하라는 요청이 있을 때는 질문이나 전화, 설득, 사진 촬영 등을 집요하게 계속해서 안 된다<sup>22)</sup>”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아저스> 신문사 사건처럼 사진을 찍지 말라는 요구에도 사진을 찍었다는 혐의나 <데일리 메일>의 경우처럼 피해자 부모가 돌아가라고 요청했음에도 돌아가지 않았다는 혐의가 있을 때 제3조 위반의 우려가 있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 V. 성범죄 보도와 IPSO 보도 가이드스<sup>23)</sup>

IPSO는 성범죄 보도 관련 언론인 실천 강령 조항을 수립한 이후, 언론사의 해당 조항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는 사례가 상당수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IPSO의 판결(Ruling) 자료를 살펴보면, 언론사가 제11조 ‘성폭행 피해자’ 조항을 위반하여 피해를 보았다고 신고된 건수가 2016년 3건이었으나, 2017년 1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PSO는 증가하는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 보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에 성범죄 보도 가이드스(Guidance on reporting sexual Offences)를 발간하여, 언론사들이 성범죄 보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이드스가 발간된 2018년에는 6건, 2019년에는 2건, 2020년에는 9월 현재까지 4건이 접수되어, IPSO가 발간한 성범죄 보도 가이드스가 일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3〉 제11조 ‘성폭행 피해자’ 조항 위반 접수 건수 (2020. 9월 기준)

	2016	2017	2018	2019	2020
건 수	3	10	6	2	4

출처: IPSO 판결 (ruling) 통계<sup>24)</sup>

21) Journalists must not engage in intimidation, harassment or persistent pursuit.

22) They must not persist in questioning, telephoning, pursuing or photographing individuals once asked to desist.

23) IPSO (2018). Guidance on reporting sexual offences.  
[https://www.ipso.co.uk/media/1585/sex-off-journo\\_v3.pdf](https://www.ipso.co.uk/media/1585/sex-off-journo_v3.pdf)

24) IPSO (2020). Ruling. <https://www.ipso.co.uk/rulings-and-resolution-statements/>

이 가이드는 성범죄 보도에 있어 잊지 말아야 할 기본적인 6가지 키 포인트(Key Points)를 최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 ① 성범죄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된다<sup>25)</sup>.
- ② 언론인 실천 강령은 피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성범죄 사건 보도에 있어 제약을 두고 있다<sup>26)</sup>.
- ③ 기사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피해자를 노출하거나 노출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 확실한지 고려해야 한다<sup>27)</sup>.
- ④ 언론보도를 위한 조사를 할 때는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sup>28)</sup>.
- ⑤ 어린이가 연관된 사건, 특히 피고와 피해자가 가족관계일 때는 추가적인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sup>29)</sup>.
- ⑥ 언론인 실천 강령 중 다수의 조항들이 성범죄 사건 보도 이슈와 관련되어 있다<sup>30)</sup>.

이 중 가장 관련도가 높은 조항은 제7조 성 관련 사건의 어린이, 제11조 성범죄 피해자이며, 이 외에도 제1조 정확성, 제2조 프라이버시, 제6조 어린이가 있다<sup>31)</sup>.

## 1. 성범죄 보도 관련 언론인 실천 강령 준수를 위한 5단계 프로세스

IPSO의 성범죄 보도 가이드는 성범죄 보도에 있어 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할 여섯 가지 키 포인트 외에도, 성범죄 보도에 있어 언론인 실천 강령을 준수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5단계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다.

---

25) There are legal protections for victims of sexual offences.

26) The Code also puts restrictions on reporting of sexual offences to protect the identity of victims.

27) Carefully consider the information you want to publish to ensure that a victim is not identified, or likely to be identified.

28) Take care when making enquiries to avoid disclosure of a victim's identity.

29) Additional protections apply in cases involving children, especially when there is a familial relationship between defendant and victim.

30) A number of clauses in the Code are relevant to the issue of reporting sexual offences.

31) The most relevant clauses are Clause 7 'Children in sex cases' and Clause 11 'Victims of sexual assault' but other clauses to consider include Clause 1 'Accuracy', Clause 2 'Privacy' and Clause 6 'Children'.

### (1) 1단계: 정보 확인(Identifying information)

첫 번째 단계는 기사 내에 잠재적으로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할 수 있는지, 언론인 실천 강령을 위반하지는 않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sup>32)</sup>. 이런 정보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피해자 및 피고에 대한 정보, 성범죄 장소나 시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상세정보, 피해자와 피고 간의 관계에 대한 언급<sup>33)</sup> 등이 있다.

### (2) 2단계: 정보 분석(Analysing information)

두 번째 단계는 확인된 정보가 실제로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시키거나 노출시킬 수 있는지 않은지 분석하는 것이다<sup>34)</sup>. 기사의 특정 정보가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할 것이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중요한 정보로 보지 않으나 지역 사회 일원 등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피해자의 신원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성범죄가 일어난 날짜를 명시한다는 것이 피해자의 신분 노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겠지만, 두 사람이 해당 날짜에 만났다는 것이 지역 사회에 알려져 있다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역뉴스에 성범죄를 보도하는 경우라면, 작은 정보라도 피해자의 신분 노출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여러 정보가 조합되었을 때 피해자가 알려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기사 내에 피해자의 나이, 범죄가 일어난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산재해 있다면, 각각의 정보는 피해자 신분 노출로 이어지지 않겠지만 정보의 조합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각그림 신원확인(Jigsaw Identification) 효과가 강조된 것이다. 조각그림 신원확인이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여러 정보가 여러 다른 기사에 걸쳐 보도되었을 때, 독자는 여러 기사를 종합하여 피해자의 신분을 유추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를

---

32) Identify the potentially identifying information within the article which needs to be assessed against the Code.

33) Information about the victim or defendant, details of the offence, which conclude where or when the offence took place, references to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ctim and the defendant.

34) Analyse whether the information might in fact identify or be likely to lead to the identification of the victim.

보도함에 있어, 담당 기자는 물론 데스크에서 현재까지 어떤 정보가 자사 혹은 타사 기사에 의해 보도되었는지를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조각그림 신원확인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사 간 협력이 필요하다. 중요하지 않은 정보라 하더라도, 이미 다른 언론에 의해 알려진 다른 정보와 조합되었을 때 피해자 신원 노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나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기사화할 때는 새로운 정보의 보도가 과연 정말로 필요한지에 대한 주의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

### (3) 3단계: 온라인 기사화(Publishing online)

세 번째 단계는 온라인을 통해 뉴스를 제공할 때, 성범죄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이다<sup>35)</sup>. 온라인 매체를 통해 기사를 발간하는 것은 온라인 상에서 새로운 독자들과 관계를 맺고 해당 이슈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를 높이게 한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을 온라인으로 기사화하는 것은 성범죄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특히, 소셜미디어나 댓글 기능이 있는 온라인 매체에서 성범죄 사건을 기사화할 때 피해자의 익명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이런 온라인 매체에서는 댓글을 통해 독자들이 추가적인 토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사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독자에 의한 피해자 신원 노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언론사는 성범죄 피해자 신원 보호의 원칙을 잘 알고 있지만, 대중은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으며, 이런 규칙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IPSO는 온라인에 성범죄 사건이 기사화되었을 때 해당 기사 링크가 온라인상에서 유통(Circulation)되는 것을 언론사가 막을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 홈페이지 외에 제3의 온라인 매체상에서 해당 성범죄 사건에 대해 오고가는 대화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여전히 언론사는 본인이 온라인상에 기사화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온라인 상에서 성범죄 사건을 기사화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IPSO의 가이드라인은 성범죄 사건을 온라인으로 기사화할 때에 대하여, 독자의 댓글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방법과 해당 온라인 기사에 대한 댓글 기능을 폐지하는 방법 등 피해자 신분 노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35) Consider how the information will be published, particularly if publishing online.

#### (4) 4단계: 취재(Making enquiries)

네 번째 단계는 언론인 실천 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당 사건을 취재해야 할지 고려해야 한다<sup>36)</sup>는 부분이다. 일부 성폭행 피해자들은 성폭행 경험이나 성폭행으로 인한 여파 등을 대중에게 알림으로써 추가적인 성폭행 방지를 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이들을 인터뷰함으로써 해당 사건을 추가적으로 취재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은 이런 성범죄 사건 취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며, 사안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5) 5단계: 어린이 연루 사건(Cases involving children)

다섯 번째 단계는 “성폭행 피해자가 어린이일 때는 언론인 실천 강령에 따라 추가적인 보호가 취해져야 한다<sup>37)</sup>”는 부분이다. 어린이 성범죄의 경우, 법적으로 그리할 수 있을지라도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린이 성범죄 사건에 가족이 연루되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할 수 있는 어떤 언급도 기사 내용에 담겨서는 안 된다. IPSO는 언론인 실천 강령 제7조에 “‘어떤 것도’ 피해자와 피고 간의 관계를 암시해서는 안 된다<sup>38)</sup>”고 명시하여, 해당 조항에 있어 매우 엄격한 수준의 잣대를 적용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성폭행 장소가 집이라고 명시하여 근친상간임을 암시한다거나, 성폭행 날짜나 시간 등을 노출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상시 만나는 사람임을 암시해서는 안 된다.

IPSO는 언론인 실천 강령 제7조 적용에 있어 ‘공익’이 우선할 때는 어린이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밝힐 수 있다고 예외의 경우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 어린이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그리할 수 있고, 아주 예외적인 공익적 목적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아직까지 IPSO에 공익과 어린이 피해자의 익명성 간에 가치 충돌이 발생한 경우가 보고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사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도 전에 IPSO에 조언을 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36) Consider how you will make any enquiries.

37) There are additional protections in the Code for children who are victims of sexual offences.

38) ‘Nothing’ should imp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ctim and the accused.

IPSO는 언제 성범죄 피해자의 익명성이 포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특수한 상황에서 판사가 익명성 자동 부여의 규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이다. 둘째, 16세 이상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법원의 동의 없이도 본인의 익명성 보장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경우이다. 하지만 16세 이하의 경우, 본인이 원하더라도 본인의 익명성 권리를 포기할 수 없으며, 부모나 보호자에 의해서도 포기될 수 없다.

피해자가 익명성을 포기하고 신원 공개에 동의한 경우, 언론사는 피해자의 동의서를 문서로 받아야만 한다. 이때 신원 공개에 대한 동의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신원 공개 동의를 이루어진 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피해자가 여전히 신원 공개에 동의하는지 다시 체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가 인터뷰를 원하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의 보도를 위해서는 동의서를 문서로 받아야 한다.

IPSO는 추가적으로 성범죄 기사를 다룰 때 사용하는 언어와 표현에 유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성범죄 사건은 매우 민감하고 개인적인 사안이며, 성범죄 피해자는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성폭행 사실을 선정적으로 다루고, 책임 소재를 따지거나, 피해자가 성행위에 동의했음을 암시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인터뷰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피해자에게 인터뷰 장소를 선택하게 하거나 적절한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VI. IPSO, 성폭행 피해자들을 위한 가이드스<sup>39)</sup> 발간

IPSO는 언론사 및 기자들이 어떻게 성범죄 사건을 보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스 뿐만 아니라, 성폭행 피해자들이 언론사의 보도나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 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다룬 가이드스 ‘언론 접촉, 성폭행 생존자들을 위한 지원(Contact with media, support for survivors of sexual offences)’을 2018년에 발간했다.

---

39) IPSO (2018). Contact with the Media: Support for survivors of sexual offences.  
<https://www.ipso.co.uk/media/1587/contact-with-the-media-for-survivors.pdf>

이 가이드는 우선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법률과 언론인 실천 강령에 의해 평생 동안 익명성이 보호된다는 정보를 제공하며 시작한다. 또한, 어떤 경우에 본인이 이 익명성 보장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지와 언론사는 성범죄 재판과 관련해 어떤 정보를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는지 명시하고 있다. 언론사 인터뷰와 관련하여,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에 대해 성폭행 피해자가 가지는 거부의 권리와 익명성 요구의 권리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인터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내가 발언한 내용은 어떻게 보도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 또한, 자신이 연루된 성범죄 보도에 대해 항의할 부분이 있을 때, IPSO에 중재 신청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IPSO가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명시하여 성범죄 보도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건 관련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 Ⅶ. <BBC>, 자율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성범죄 보도 규제

IPSO라는 자율규제 기관 설립을 통해 성범죄 보도를 규제하고 성범죄 피해자의 인격을 보호하는 경우 외에도, 언론사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한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 대표 방송사인 <BBC>를 들 수 있다.

<BBC>의 언론 가이드라인(Editorial Guideline)<sup>40)</sup>을 살펴보면, 성범죄 보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은 없지만 제8조 ‘범죄 및 반사회적 행위 보도 가이드라인 (Reporting Crime and Anti-social Behaviour Guidelines)’를 통해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사건 보도를 규율하고 있다.

우선, 제8조 제3항 제37호에서 범죄 피해자나 목격자의 신원 보호를 다루고 있다. 법적으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름은 물론 주소, 사진이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어떤 단서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IPSO 가이드스처럼 ‘조각그림 효과’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는데, 다른 매체에서 보도된 여러 개의 기사들이 조합되었을 때 특정 인물의 신원이 드러날

---

40) BBC (2020). Editorial Guidelines. <https://www.bbc.com/editorialguidelines/guidelines/crime/guidelines#paedophilesandothersexoffenders>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조각그림 효과의 위험은 성범죄를 보도할 때 가장 높다고 지적하며, 특히 ‘근친상간(incest)’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말아야 하고 ‘심각한 성폭행(Serious sexual offence)’과 같은 대체어를 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 4〉 〈BBC〉 언론 가이드라인 제8조 제3항 제37호

조항	내용
제8조 제3항 제37호	<p><b>범죄 피해자와 목격자의 신원 보호 (Disguising Identities of Witnesses and Victims of Crime)</b></p> <p>재판에 관련된 사람의 신원을 보도하지 말아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범죄 피해자와 목격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름, 주소, 사진,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어떤 단서라도 익명화 되어야 한다.</p> <p>또한, 그림조각 효과에 의해 간접적으로 사람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효과는 다른 매체의 여러 기사들이 한 사건에 대해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데, 이런 정보들이 조합되면 관련인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 이 위험은 가족 내 성범죄를 보도할 때 가장 높다. 예를 들어, 특정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을 때에는 ‘근친상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근친상간이 ‘심각한 성폭행’과 같은 다른 표현으로 묘사되어야 한다<sup>41)</sup>.</p>

출처: BBC Editorial Guideline

〈BBC〉는 제8조 제3항 제38호에서 어린이나 청소년이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목격자인 경우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BBC〉는 IPSO보다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IPSO는 16세 이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BBC〉는 이를 청소년까지 포함하여 18세 이하의 피해자나 목격자에게는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이름이나 주소, 학교 등을 보도하기 전에 이들의 취약성에 대해 반드시 먼저 판단해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8조 제3항의 제13호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소년법원의 모든 재판에 대한 보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의 재판 중 어린이가 관련된 재판,

41) There may be legal reasons why the identities of people involved in a trial may not be reported. If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identity of crime victims and witnesses, anonymity normally means no name, no address, no photograph, or any other clue as to identity. We should also take care not to identify people indirectly by what is known as a ‘jigsaw effect’. This occurs when separate reports, which could be in different media, give different details of a case which, when pieced together, reveal the identity of the person involved. The risk is at its highest when reporting sexual crime within the family. For example, we should take care not to refer to incest where someone might be identified as the victim. In such cases, incest should be described as a ‘serious sexual offence’.

가족 내 성적 학대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표 5〉 〈BBC〉 언론 가이드라인 제8조 제3항 제38호, 제13호

조항	내용
제8조 제3항 제38호	<b>범죄의 피해자이거나 목격자인 어린이와 청소년 (Children and Young People Who Are Witnesses or Victims of Crime)</b> 영국에서 형사 사건을 보도할 때, 18세 이하의 목격자나 피해자를 다루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들의 이름, 주소, 학교, 교육기관, 소셜미디어 상의 신원, 직장, 사진, 동영상 등을 보도하기 전에 이들의 취약성에 대해 필히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sup>42)</sup> .
제8조 제3항 제13호	<b>법정 기사와 재판 보도(Court Reporting and Covering Trials)</b>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의 치안법원 및 형사법원 예심 재판에는 보도 제약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만을 보도할 수 있다. 18세 이하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년법원의 모든 재판에는 보도 제약이 적용된다. 아동 시설보호 관련 재판 등 가정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있어서도 어린이의 신원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 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보도의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가족 내 성적 학대에 대한 기소 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sup>43)</sup> .

출처: BBC Editorial Guideline

언론보도를 위한 취재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8조 제3항 제7호부터 제9호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IPSO의 가이드라인 대비 특이점은 IPSO의 가이드라인이 피해자 인터뷰 시 주의해야 할 실천 강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BBC〉의 가이드라인은 가해자를 인터뷰함에 따라 피해자가 간접적으로 입게 되는 피해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BBC〉 가이드라인은 범죄나 반사회적 행위의 피고를 인터뷰하거나 과거의 사건을 재구성할 때, 해당 사건의 피해자나 친인척들에게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

42) We must take care when dealing with anyone under 18 involved as a witness or victim, when reporting an investigation into an alleged criminal offence in the UK. We must make judgements about their vulnerability before revealing their name, address, school or other educational establishment, how they are identified on social media, place of work, or any still or moving picture of them.

43) Reporting restrictions cover preliminary proceedings in magistrates' courts and Crown Courts in England and Wales so that normally only basic details can be reported. Reporting restrictions cover all proceedings in Youth Courts to protect the identity of any under-18 involved. We must not identify any child as being the subject of ongoing proceedings in family law cases which includes, for example, care proceedings. Courts may also pass orders limiting what can be reported in a particular case. Particular care is needed to avoid the identification of victims in prosecutions for sexual abuse within the family.

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보도 전에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미리 연락을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제9호에서는 범죄 관련자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이름과 주소를 바꿔 생활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의 새로운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 6〉 <BBC> 언론 가이드라인 제8조 제3항 제7호 내지 제9호

조항	내용
제8조 제3항 제7호~제9호	<p><b>피해자에 대한 영향(Imact on Victims)</b></p> <p>7호. 범죄, 반사회적 행위의 피고를 인터뷰하거나 과거의 사건을 재구성 및 드라마화할 때, 해당 사건의 피해자나 친인척들에게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생존 피해자나 고인의 가까운 친인척에게 연락하여 계획에 대해 의논해야 한다. 경찰과 사회복지 서비스 등 중재인을 써야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나 가까운 친인척들에게 정보가 전달되었고 &lt;BBC&gt; 관련팀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sup>44)</sup>.</p> <p>8호. 범죄자에 대한 보도가 가족 환경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증거 없이 연관성으로 유죄를 암시해서도 안 된다<sup>45)</sup>.</p> <p>9호. 역사적인 범죄를 보도할 때, 가해자, 용의자, 목격자, 친인척, 피해자 등의 관련자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이름과 주소를 바꿨을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이런 경우라면, 그들의 새로운 주소나 신원노출의 정도에 대해 세심한 고려가 주어져야 한다<sup>46)</sup>.</p>

출처: BBC Editorial Guideline

## VIII. 결론

영국은 지난 1976년 ‘성범죄 법 1976(The Sexual Offences Act 1976)’에 의해 성범죄 피해자의 인격권을 법률로 처음 보호하기 시작한 이래, 여러 번의 법 개정을 통

44) When we interview those responsible for crime/anti-social behaviour or reconstruct/dramatise past events, it may cause distress to victims and/or their relatives. We should, as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contact surviving victims, and/or the immediate relatives of the deceased and advise them of our plans. If it is necessary to use an intermediary, such as the police or social services, it is still our responsibility to check that the victims and/or immediate relatives have been informed and have the necessary details to contact us.

45) Reporting the facts about criminals may include detailing their family circumstances, but we should avoid causing unwarranted distress to these families. Nor should we imply guilt by association without evidence.

46) When we report historic crim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possibility that some of those involved - offenders, suspects, witnesses, relatives or victims - may have changed their names or addresses in order to re-establish their lives. Should that be the case, the extent to which we identify them or their new whereabouts should be given particularly careful thought.

해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해왔다. 또한, 최근에는 IPSO 등 자율규제기관을 통한 성범죄 보도 규제 및 성범죄 피해자 인격권 보호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BBC>의 사례와 같이 언론사 자체적으로도 이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즉, 법률에 의한 규제, 자율규제기관의 실천 강령 수립을 통한 규제, 언론사 자체 규제 등 3단계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성범죄 보도와 관련자 인격권에 대한 이런 오랜 논의와 발전 속에서도 아직까지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성폭행 피의자의 인격권을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1976년 성범죄 법에는 원고와 피고 간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양측의 익명성이 보장되었다. 이는 1988년 원고(피해자)의 익명성만을 보장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2010년에 다시 피고(가해자)의 익명성 또한 보장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 바 있다. 현재도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슈는 논란으로 남아있다.

성범죄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주로 공익적 측면을 강조한다. 성범죄 피의자의 신원을 언론이 공개함으로써 추가적인 성범죄 피해를 줄이고, 성범죄 가해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유사 성범죄 예방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성범죄 피의자의 신원 또한 보호되어야 한다는 측에서는 허위 혐의(Flase Allegations)를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 성범죄 피의자가 겪게 되는 피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부분이 현행법과 현행규제의 맹점으로 자주 지적되고 있는데, 누군가가 허위로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할 경우,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익명성을 보호받지 못하고, 유죄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적이고도 심각한 인격적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반해, 허위로 성범죄 사실을 신고한 가짜 피해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평생 동안 익명성을 보장 받는다는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한다.

성범죄를 포함한 영국의 범죄 보도 및 범죄 관련자의 신원공개에 있어 또 한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은 언론의 자유나 이를 통한 공공의 이익과 같은 가치가 우선되는지, 개인의 인격권, 프라이버시, 명예와 같은 가치가 더 우선되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영국은 개인의 신원이 동의 없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데이터보호법과 인권법을 통해 명시하고 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보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 경찰과 언론은 필요한 경우 수사 단계부터

범죄 관련자의 신분을 보도하도록 가이드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사가 이런 가이드를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피해보상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에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권리에 우선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그 법리적 해석이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가 공익적 차원에서 범죄 관련자 신상을 보도했다는 주장이 차후에 법정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익스프레스지(Express)>는 2008년 한 부부의 3살 딸에 대한 살인 혐의를 보도했다가 이들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55만 파운드(한화 약 8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BBC>는 2009년 자동차 사기사건 보도로 5만 파운드(한화 약 8천만원)의 명예훼손 합의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에 따라 <BBC>는 범죄관련 뉴스 보도 시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안별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개인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가이드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시되는지에 대해 사안별로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범죄 관련자 신원 보도의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영국에서 성범죄 피의자 신원 공개 여부 및 공익과 개인의 권리 간 가치 갈등 문제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형이다. 성범죄 피의자 신원 공개에 대한 이슈는 입법 차원의 이슈로,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 간의 가치 갈등 문제는 사례별로 두 가치 간의 경중이 다르게 판단될 수밖에 없다. IPSO의 결정례와 법원의 관련 사건 판례가 더 많이 축적되어야만 어떤 경우에 공익이 우선하고, 어떤 경우에 개인의 권리가 우선하는지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 of England, Wales & Northern Ireland(2009). GUIDANCE ON THE RELEASE OF IMAGES OF SUSPECTS AND DEFENDANTS. Retrieved from <http://library.college.police.uk/docs/acpo/ACPO-Guidance-Release-Images-Suspects-Media.pdf>
- BBC (2020). Editorial Guidelines. Retrieved from <https://www.bbc.com/editorialguidelines/guidelines/crime/guidelines#paedophilesandothersexoffenders>
- IPSO (2015). 05764-15 A man v Daily Record. Retrieved from <https://www.ipso.co.uk/rulings-and-resolution-statements/ruling/?id=05764-15>
- IPSO (2015). 05764-15 00768-15 *A man v Wilts & Gloucestershire Standard*. Retrieved from <https://www.ipso.co.uk/rulings-and-resolution-statements/ruling/?id=00768-15>
- IPSO (2016). 12775-17 *A Man v The Gazette(Paisley)*. Retrieved from <https://www.ipso.co.uk/rulings-and-resolution-statements/ruling/?id=12775-17>
- IPSO (2016). 16830-17 *Warwickshire Police v Daily Mail*. Retrieved from <https://www.ipso.co.uk/rulings-and-resolution-statements/ruling/?id=16830-17>
- IPSO (2016). 20796-17 *A woman v The Argus(Brighton)* Retrieved from <https://www.ipso.co.uk/rulings-and-resolution-statements/ruling/?id=20796-17>
- IPSO (2016). The Editors' Code of Practice. Retrieved from <https://www.ipso.co.uk/media/1305/a4-editors-code-2017.pdf>
- IPSO (2018). Contact with the Media: Support for survivors of sexual offences. Retrieved from <https://www.ipso.co.uk/media/1587/contact-with-the-media-for-survivors.pdf>
- IPSO (2018). Guidance on reporting sexual offences. Retrieved from [https://www.ipso.co.uk/media/1585/sex-off-journo\\_v3.pdf](https://www.ipso.co.uk/media/1585/sex-off-journo_v3.pdf)
- IPSO (2018.10.15). Press watchdog publishes guidance on reporting of sexual offences for journalists and information for survivors [online]. London: IPSO. Retrieved from <https://www.ipso.co.uk/news-press-releases/press-releases/press-watchdog-publishes-guidance-on-reporting-of-sexual-offences-for-journalists-and-information-for-survivors/>

- IPSO (2018.10.24). Reporting sexual offences [online]. London: IPSO. Retrieved from <https://www.ipso.co.uk/news-press-releases/blog/ipso-blog-reporting-sexual-offences/>
- IPSO (2019). The Editors' Code of Practice. Retrieved from <https://www.ipso.co.uk/media/1818/69196-ipso-editors-code-2019.pdf>
- IPSO (2020). The Editors' Codebook: The Handbook to The Editors' Code of Practice. Retrieved from <http://www.editorcode.org.uk/downloads/codebook/Codebook-2020.pdf>
- IPSO (2020). Ruling [online]. London: IPSO. Retrieved from <https://www.ipso.co.uk/rulings-and-resolution-statements/>
- Ministry of Justice (2015). Code of Practice for Victims of Crime. [online]. London: Ministry of Justice. Retrieved from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76900/code-of-practice-for-victims-of-crime.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76900/code-of-practice-for-victims-of-crime.PDF)
- Press Gazette (2019.6.19). Identifying sex crime victims while newsgathering is breach of code, IPSO clarifies. Press Gazette. Retrieved from <https://www.pressgazette.co.uk/identifying-sex-crime-victims-to-people-while-newsgathering-is-breach-of-code-ipso-clarifies/>
-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2020). Rape and Sexual Offences - Chapter 20: Media Guidance for Rape Prosecutors. [online]. London: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Retrieved from <https://www.cps.gov.uk/legal-guidance/rape-and-sexual-offences-chapter-20-media-guidance-rape-prosecutors>
- UK Parliament (1976). Sexual Offences (Amendment) Act 1976. Retrieved from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76/82/contents>
- UK Parliament (1992). Sexual Offences (Amendment) Act 1992. Retrieved from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2/34/section/1>
- UK Parliament (2003). Sexual Offences Act 2003. Retrieved from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3/42/contents>